

다섯번째 봉투의 색상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상업광고 게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주요골자 사항이 되겠습니다.

以上 提案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(參 照)

釜山廣域市沙下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 관한條例中改定條例案

(끝에 실음)

○委員長 金興山 尹汝鐵 清掃行政課長 수고 하셨습니다.

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.

○專門委員 金漢墩 都市産業專門委員 金漢墩입니다.

釜山廣域市沙下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 관한條例中改定條例案 檢討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.

(報 告)

1. 제안이유

폐기물 관리법 개정(1995.8.4)으로 추가신설된 용어를 개정하고 폐기물배출요령 안내방법, 분리보관 종류 확대, 봉투색상선정 방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

2. 관련법령

○ 폐기물관리법 제2조, 제6조, 제15조 개정으로 용어변경

○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

3. 개정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2조

폐기물의 종류에 "사업장폐기물"과 "건설폐기물, 사업장계 생활폐기물, 생활폐기물"의 용어를 신설

○ 조례안 제4조

폐기물의 분리를 "재활용가능폐기물, 가연성폐기물, 불연성폐기물"을 세분화 분리보관 할 수 있도록 함.

○ 조례안 제6조

쓰레기 배출자의 쓰레기 감량배출을 의무화 시킴.

○ 조례안 제8조

쓰레기 배출요령의 주민 홍보방법을 안내문 제작 배포방법으로 변경

○ 조례안 제10조

쓰레기 봉투의 색상을 구청장이 지정토록 하고, 봉투제작시 상업광고(광고수수료납부)게재 근거 신설

○ 조례안 제11조

쓰레기봉투 공급을 동사무소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공급으로 확대운영

4. 검토의견

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용어와 법조문 변경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여진 그 사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金興山 金漢墩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.

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.

質疑는 1問1答式으로 進行하겠습니다.

質疑하실 委員께서는 거수로써 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文秀明 委員 質疑하십시오.